

사회복지 주간 동향(24.1.8.~1.12.)

1. 중앙정부 정책 동향

1 중앙정부 복지현안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운영으로 양육공백 해소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운영으로 양육공백 해소

긴급돌봄, '2시간전'까지 신청 가능
단시간 돌봄, 최소 1회 1시간 이용 가능



- * 여성가족부가 20일(수)부터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
- *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사업
 - 사업내용
 - 긴급돌봄 :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기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단시간돌봄 : 1회 1시간 서비스 이용(기존: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요금 : 시간당 기본요금('23년 11,080원) + 신청건당 4,500원(이용자 추가 부담)
 - 시범기간 : '23.12.20.(수) ~ 약 3개월
 - 신청방법 : 아이돌봄 이용자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앱에서 신청
- *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신청 시 아이돌보미를 연계하고 아이돌보미가 이용 가정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 신청하도록 운영
 - 그러나 계획되지 않은 출장·야근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 4시간 전 신청 제한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긴급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요가 지속됨
 -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 신청 시간을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범운영
- * 아울러, 등·하교 등 짧은 시간의 돌봄만 필요한 가정과 같이 최소이용시간인 2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1시간) 돌봄 서비스도 시범 도입,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가 긴급하게 이동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기본 이용요금(소득기준별 상이)에 건당 4,500원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며,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
 -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
 - * 한편, 여성가족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4,679억 원 편성(정부안)하였으며, 정부지원가구도 8만5천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2만 5천 가구 확대할 계획
 - 그동안은 이용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만 이용요금을 차등하여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
 -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되며,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활동수당을 올해 대비 5% 인상(10,110원)할 계획
-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참조:여성가족부) 참조

2 중앙정부 복지현안

거동불편노인,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시간 이상으로 확대

< 거동이 불편한 중점돌봄군 약 6만 명, 4시간 이상 확대 혜택 >
>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2천 4백여 명 증원 >

- *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기존 월 평균 16시간 제공되던 돌봄 서비스가 월 20시간 이상으로 확대
 - *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힘
 - 중점돌봄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55만 명) 중 신체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어르신들로 약 6만 명이 해당, 이들에게 월평균 16시간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1월부터 20시간 이상으로 늘려 개인별 건강상태와 서비스 욕구에 따라 안전지원,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
 -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인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도 기존 3만 6천여 명에서 2천 4백여 명 증원
 - 이외에 서비스 신청 편의를 위해 대리신청자 범위에 기존 친족, 이해관계인(이웃 등) 외에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한기준을 완화
- ※ 보도자료 참조(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3 중앙정부 복지현안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0~1세 영아기 지원금액 2,000만원 + α 수준으로 혜택 늘어 >
< 아빠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 원 >
<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

- * 정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힘
 - 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에 확대되는 사항은 정책방향을 구체화 한 것
 - 5대 핵심분야: ① 양육비용 부담 경감, ②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③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④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⑤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 * 2024년 확대되거나 신설되는 주요 정책

1. 생애주기별 임신·출산·양육 지원

- * 0~1세 영아기 지원금액 2,000만원 + α로 강화
 - 부모급여 1,8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300만 원
-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신설,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등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① (임신) 임신 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사전 난임 검사) 임신 계획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준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

- < 주요 지원 검사항목 >
- 난소기능검사(AMH) : 난소내 난포의 수와 난소의 나이 추정 가능, 난소의 기능과 생식능력 판단 지표
 - 부인과 초음파 :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 확인, 자궁근종, 난소 난종 등을 진단
 - 정액검사 : 정자의 활동성, 정자 수, 기형여부 등을 확인하여 남성불임 진단 검사방법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100만 원 상한)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신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4월부터 시행)
 -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그간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도별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일부에만 시술비용이 지원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소득수준·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1월 시행)

- (난임 시술간 칸막이 폐지) 체외수정(신선·동결)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를 폐지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2월 시행)

현행(~'24.1월)				개선(24.2월~)	
체외수정	신선배아	16회	9회	체외수정 (신선·동결배아 통합)	20회 (+4회)
	동결배아	회	7회		
인공수정		5회		인공수정	5회

- 또한 난자채취 실패,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등은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미차감하여 난임부부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도 함께 폐지(1월 시행)
-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의료비 실지출이 많은 다둥이(쌍둥이 이상) 임신에 대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1월 시행)

구 분	단태아 임신	쌍둥이 임신	세쌍둥이 임신	네쌍둥이 이상 임신
현 행	100만원	140만원		
개선(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후 100만원씩 증액)

② (출산) 출산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을 둘째아부터 300만 원(기존에는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 원)으로 인상(1월 시행)
-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年 200만 원)는 그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음(1월 시행)
-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 기본공제 5천만 원을 포함하면 혼인·출산 전후 최대 3억 원까지(양가 각 1.5억 원)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음(1월 시행)
- 단 기본공제 5천만 원은 혼인·출산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최대 1억 원
- (보호출산·출생통보제 시행)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의 출생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여 보호하게 됨,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이 전국에 12개소 설치되어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지원,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있다면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한 후 태어난 아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7월 시행)

③ (양육)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분야의 지원을 확대

[양육비용 지원 강화]

- (부모급여 인상) 부모급여 지원액을 0세 월 70만 원 →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 → 50만 원으로 인상, 출산 직후 지원 받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첫째)~300만 원(둘째 이상)을 포함하여 0~1세 영아기 지원액을 2,000만 원 + α 수준(부모급여 1,8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300만 원)으로 강화(1월 시행)



- (세제지원 확대)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 원(현행 4,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 →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녀세액공제도 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 원 인상함에 따라 자녀 출생순서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15/20/30만 원(현행 15/15/30만원)으로 확대
-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2023년까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했으나, 2024년부터는 최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1월 시행)
 - 사례: 총급여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출산·보육수당 매월 20만 원 지급받는 경우 세금부담 감소 효과 : - 연 18만 원 수준 (비과세소득 증가액 120만 원 × 세율(15%))
-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을 기존에는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로 한정하였으나,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으로 확대(1월 시행)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액을 인상(기저귀 8→9만 원, 조제분유 10→11만 원)하여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1월 시행)

[돌봄·교육 지원 내실화]

- (늘봄학교 전국 도입) 2024년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 2024년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에서,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
- (유보통합) 유치원-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같은 나이의 아동이 어떤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 교육·돌봄 환경의 차이가 발생했으나, 정부 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2023.12.8.일)됨에 따라 격차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6월 시행)

- (시간제보육기관 확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가정양육 부모 (아동)가 필요한 시간에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대폭 확대(2023년 1,030개반 → 2024년 2,315개반, 신규 1,285개반 2024.7월부터 운영)
-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지원)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0~2세 영아반은 현원을 채우지 못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이 많은 상황에서 지역의 적정 돌봄인프라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영아반에 대해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
 -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연령, 정원 대비 부족 인원에 따라 23만 원 ~ 70만 원)
-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급)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사업을 신설, 임차비로 지출한 비용의 80%(임차 보증금 제외)까지 지원
- (다둥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 양육 지원을 내실화, 먼저 세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인력을 출생아 수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기존 최대 2명),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까지(기존 최대 25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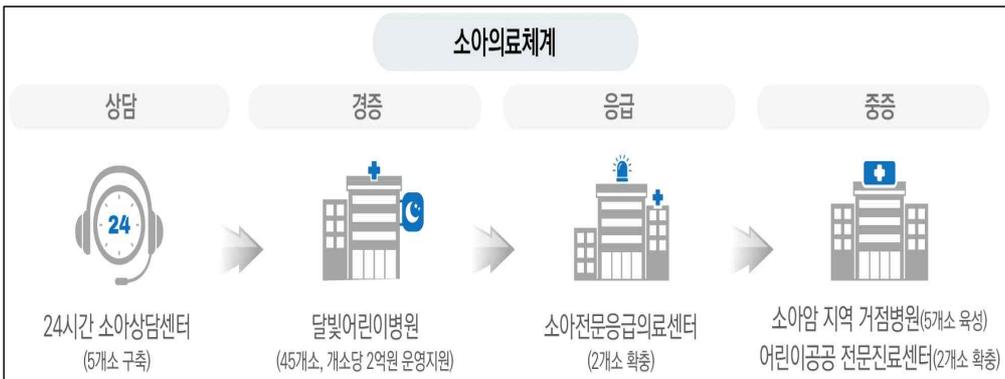
구 분	현 행		개선 방안	
	지원인력	지원기간	지원인력	지원기간
신생아 1명	1명	(첫째아) 5/10/15일 (둘째아 이상) 10/15/20일	좌 등	
신생아 2명 (쌍둥이)	2명	10/15/20일		
신생아 3명 (세쌍둥이)	2명	15/20/25일	태아 수에 맞춰 증원 *세쌍둥이 3명, 네쌍둥이 4명 등 지원인원 2명 유지 시 수당 인상 지원 세쌍둥이 이상 지원일수 확대 *(기존) 15/20/25일 → (개선) 15/25/40일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를 최대 11만여 가구(2023년 8.5만가구)로 늘림,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10% 추가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에서 비용을 90%까지 부담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 2023년 】 정부지원비율		【 2024년 】 정부지원비율			
		0~5세	6~12세	1자녀		2자녀 이상	청소년(한)부모 (0~1세)
				0~5세	6~12세		
㉠형	75% 이하	85%	75%	85%	75%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지원	90%
㉡형	120% 이하	60%	20%	60%	30%		
㉢형	150% 이하	15%	15%	20%	15%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소아의료 강화]

- (의료비 부담 완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4부터 2세 미만 영유아는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5% → 0%로 개선한다.(1월 시행)
-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의료비 부담을 추가 완화하기 위해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인정되던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한도를 폐지(1월 시행)
-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을 일괄 폐지하고,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최대 16개월 → 24개월로 개선(1월 시행)
- (소아의료체계 강화) 소아의료체계도 대폭 강화, 먼저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상담센터'를 전국에 5개소 설치하고,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 소아응급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2023년 10개소에서 2024년 12개소로 확대(1분기~)
- 지역에서 중증소아환자에 대해 적정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공공전문 진료센터를 2023년 12개소에서 2024년 14개소로 확대하고, 소아암 진료 체계 구축을 위해 거점병원을 5개소 육성, 이런 과정에서 소아전문 의료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소아 전임의를 대상으로 수련보조 수당을 신규로 지원 (월 100만원)



2.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도록 일·가정양립 지원

◆ **엄마·아빠 맞돌봄 확대를 위해 3+3 육아휴직제도 → 6+6제도로 강화**
6개월간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원 지원

- (6+6 육아휴직제도) 엄마 아빠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하여 6개월 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 원 지원\ (1월 시행)

[육아휴직 사용기간별 최대 지급액(만 원)]

부 모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개월	부: 200 모: 200	부: 350 모: 200	부: 500 모: 200	부: 650 모: 200	부: 800 모: 200	부: 950 모: 200
2개월	부: 200 모: 350	부: 450 모: 450	부: 600 모: 450	부: 750 모: 450	부: 900 모: 450	부: 1,050 모: 450
3개월	부: 200 모: 500	부: 450 모: 600	부: 750 모: 750	부: 900 모: 750	부: 1,050 모: 750	부: 1,200 모: 750
4개월	부: 200 모: 650	부: 450 모: 750	부: 750 모: 900	부: 1,100 모: 1,100	부: 1,250 모: 1,100	부: 1,400 모: 1,100
5개월	부: 200 모: 800	부: 450 모: 900	부: 750 모: 1,050	부: 1,100 모: 1,250	부: 1,500 모: 1,500	부: 1,650 모: 1,500
6개월	부: 200 모: 950	부: 450 모: 1,050	부: 750 모: 1,200	부: 1,100 모: 1,400	부: 1,500 모: 1,650	부: 1,950 모: 1,950

* 부모 각각의 사용 개월수에 따른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금액과 일반육아휴직급여액을 합산한 금액

-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보 지원) 근로자가 일·가정양립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인재채움뱅크(舊 대체인력뱅크)를 5개까지 확대하고 민간 취업포털 3개사에 '인재채움 전용관'을 설치하여 접근성 및 활용도를 개선(1월~)
 - 인재채움뱅크 : (2022년) 2개소 → (2023년) 3개소 → (2024년) 5개소
- (추가 추진 과제)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일·가정양립제도 강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서 논의 중
 - ① 남·녀 맞돌봄 확산을 위해 엄마 아빠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확대,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연령 상향, 기간 확대, 급여 확대
 - (연령 상향) 초등 2학년(8세) → 초등 6학년(12세)
- (기간 확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 → 최대 36개월(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2배로 가산)
- (급여 확대) 주당 최초 5시간 → 주당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
 - ③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개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④ 난임 치료의 실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제도사용 활성화를 위해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 (기간 확대) 3일(1일 유급) → 6일(2일 유급) / (휴가 급여지원) 최초 2일
 - ⑤ 배우자가 산모와 자녀를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를 확대하고 급여가 지원되는 기간 확대

3.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확대

- (출산가구 특례대출 신설) 출산한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의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구입·전세)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기준을 2배 완화하여 적용, 대출 시행 이후 추가 출산한 경우 추가 우대금리(신생아 1명당 0.2%p)적용, 특례기간 연장 등을 적용 (2024년 1월 시행,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구분	신생아 특례 디딤돌 구입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소득	1.3억 원 이하		1.3억 원 이하	
자산	4.69억 원 이하		3.45억 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대출한도	5억 원		3억 원	
소득별 금리(%)	8.5천만 원 이하	1.6~2.7	7.5천만 원 이하	1.1~2.3
* 1자녀 기준	8.5천만 원~1.3억 원	2.7~3.3	7.5천만 원~1.3억 원	2.3~3.0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4 중앙정부 복지현안

아이와 함께 커가는 행복

< '24년 확대되는 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업 현장 홍보 실시 >

- * 1월 5일(금) 15시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24년 대폭 확대되는 임신·출산·양육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는 현장 홍보 행사가 열림
- 이번 현장 홍보는 지난 '23.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수립한 저출산 5대 핵심분야의 세부 정책 중 '24년에 지원이 확대되는 제도들을 안내하는 것으로 ' ① 임신·출산 준비 과정부터 국가가 동행합니다. ② 출산가정의 부담이 덜어집니다. ③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④ 일과 가정병행이 보다 편안해집니다. ⑤ 결혼·출산 시 주택마련의 기회가 커집니다. ' 가 주요내용
- ① 임신·출산 준비 과정부터 국가가 동행합니다.
 - 올해부터 국가지원을 받아 난임여부를 검사 간으, 소위 '난소나이검사'로 불리는 AMH 혈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를 위한 비용이 지원되며 원하는 부부는 4월부터 전국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음, 그 외에 난임 시술비에 대한 건강보험이 최대 20회까지 확대되고, 본인부담 및 비급여에 대한 지원도 소득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음
- ② 출산가정의 부담이 덜어집니다.
 - 올해 태어나는 둘째아는 3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받음, 또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산후조리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③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다면 0세 때는 월 100만 원, 1세에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음,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라면 자녀 1인당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원
 - 저소득층이라면 지원이 더욱 많음, 17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기준중위소득 50%(3인가구 기준 월 소득 471만 4657원) 이하의 가구라면 디딤씨앗 통장 개설 가능, 디딤씨앗통장에 5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매칭하여 월 15만 원이 쌓이게 됨
- ④ 일과 가정 병행이 보다 편안해집니다.
 - 올해부터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높아져 최대 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 그 외에도 관련법을 개정하여 하루 2시간씩 아이가 초등 6학년이 될 때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 있게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도록 한다는 방침
- ⑤ 결혼·출산 시 주택 마련의 기회가 커집니다.
 -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인데 신생아가 있다면,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가능, 또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청약제도가 정비

※ 보도자료 참조(복지정책과 인구정책총괄과)

5 중앙정부 복지현안

장애인연금 1월부터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1만 1,630원 인상 >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1만원 인상 >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8만원 인상 >

- * 2024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음,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작년 대비 2만 1,630원 인상
- *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
 -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며, 같은 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정함
 - 2024년도 기초급여액은 2023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1만 1,630원 인상하였고, 이에 따라 월 최대 33만 4,810원을 지급
 -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급여와 함께 지급하며, 2024년에 1만 원을 인상하여 월 최대 9만 원을 지급,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인상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13조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
 - 다만, 2024년 1월 20일은 토요일이므로 법령에 따라 그 전날인 1월 19일에 인상된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반영한 1월분 장애인연금이 지급

< 장애인연금 월 지급액 >

구분	2023년	2024년	인상분
장애인연금	403,180원	424,810원*	+21,630원
기초급여	323,180원	334,810원	+11,630원
소비자물가상승률	3.6%	-	↑3.6%
부가급여	8만 원	9만 원	+1만 원

-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이며,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시함
 - 2024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0만 원이며, 부부가구는 208만 원,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

구분	2023년	2024년	인상분
단독가구	122만 원	130만 원	+8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	208만 원	+12만 8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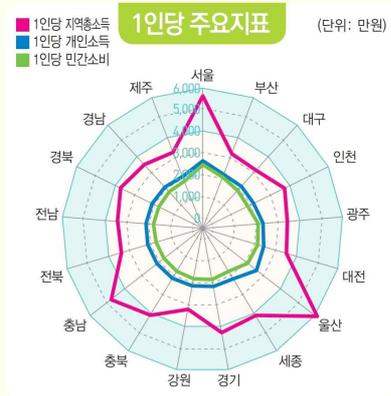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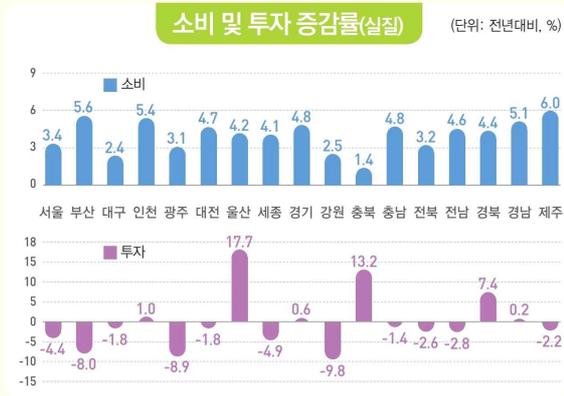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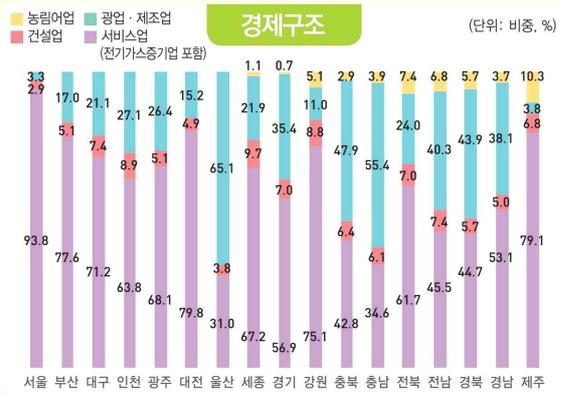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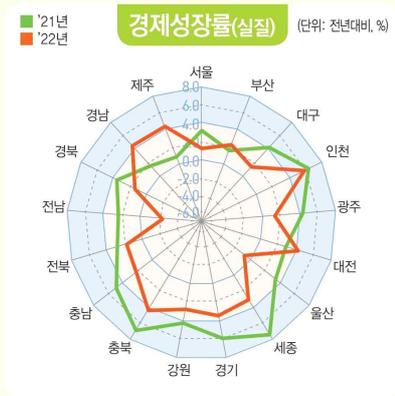
- *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안내

※ 보도자료 참조(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2. 통계로 보는 복지

1 중앙 통계현안

2022년 지역소득



※ 자료 : 통계청 자료(통경제통계국 소득통계과)